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52

발의년월일 : 2010. 6. 7.
제 안 자 : 김 소 림 의원
(찬성자 4인)

□ 제안이유

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10. 7. 1부터 시의회내에 교육위원회가 신설되고

나. 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에 소관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직원은 교육감이 임명함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 교육위원회 사무직원 정원을 포함한 근거규정을 명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및「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안 제5조)

□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발췌사항

나. 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 관련공문(정비방안)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및「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관 련 법 령 발 췌 사 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교육위원회의 설치) 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의원과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7장에 따라 별도로 선출된 의원(이하 "교육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교육의원이 궐원되어 과반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교육위원회 위원 및 교육의원 정수는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10.2.26]

제17조(교육위원회 사무에 대한 지원) ①교육위원회 및 시·도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회의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

[별표 1] <개정 2010.2.26>

각 시·도별 교육위원회 위원 및 교육의원 정수 (제5조 관련)

시·도	교육위원회 위원 정수	교육의원 정수
서울특별시	15인	8인
부산광역시	11인	6인
대구광역시	9인	5인
인천광역시	9인	5인
광주광역시	7인	4인
대전광역시	7인	4인
울산광역시	7인	4인
경 기 도	13인	7인
강 원 도	9인	5인
충 청 북 도	7인	4인
충 청 남 도	9인	5인
전 라 북 도	9인	5인
전 라 남 도	9인	5인
경 상 북 도	9인	5인
경 상 남 도	9인	5인
계	139인	77인

시·도 교육위원회
지원조직 설계 및 정원운용 방안 안내

2010. 4

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

교육위원회 지원조직 설계 및 정원운용 방안 안내

1 안내 배경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0. 7.1부터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사무기구 정비 필요

○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함께 검토한 지원조직 설계 및 정원운용 방안을 제시하여 시·도와 교육청이 추진하는 사무기구 정비를 지원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관계 규정 〉

개 정 전	현 행
제17조 (의사국의 설치등) ①교육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사국을 두고, 의사국에는 의사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의사국장 및 직원(이하 이 절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④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교육감이 임명한다.	제17조 (교육위원회 사무에 대한 지원) ①교육위원회 및 시·도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회의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

2 정비 방안

□ 조 직

○ **(기구)** 현행 교육위원회 의사국은 폐지하고, 의회 사무처에

교육위원회 담당 4급 전문위원을 설치

- 교육의원 정수가 6명 이상인 시·도는 4급 1개와 5급 1개를, 6명 미만인 나머지 시·도는 4급 1개를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의 지방의원 정수는 교육의원 정수를 제외하고 산정

○ **(정원)** 교육 전문위원과 소속 사무직원은 현행 의사국 정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와 교육청이 협의하여 적정 규모로 책정

- 현행과 같이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정원을 관리하고 교육자치법에 따라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은 교육감이 임명
- 정원관리 단위기관은 교육위원회 의사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로 변경

※ 교육위원회는 교육의원과 일반의원이 함께 구성되므로 교육 전문위원실에 시·도의회사무처 직원 추가 배치 가능. 다만, 그 정원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책정

□ 자치법규

○ **(시·도)** 시·도 의회 사무처 설치 및 정수 조례,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에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설치에 관한 사항 반영

- 시·도 의회 사무처 설치 및 정수 조례에는 사무직원 정원을 교육청 정원으로 책정함을 명시
-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에는 교육 전문위원 규정을 신설

〈 시·도의회사무처 설치 및 정수 조례 개정(예시) 〉

현 행	개 정 안
제○조(전문위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사무보조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시·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	제○조(전문위원) (현행과 같음) 제○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시·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시·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

〈 시·도 의회사무처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개정(예시) 〉

현 행	개 정 안
제○조(전문위원) ①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 (중 략) .... 5. 건설환경위원회 전문위원 :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신 설> ②전문위원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안심사 및 의사진행 .... (중 략) .... 4. 기타 위원회활동 보좌에 관한 사항	제○조(전문위원)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② (현행과 같음)

○ **(교육청) 현행 교육위원회 의사국 설치 및 정수 조례는 폐지**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시행규칙상 정원관리 단위기관을 교육위원회 의사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로 변경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예시) 〉

현 행	개 정 안
제○조(정원의 총수) ○○시·도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명으로 하며,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위원회 의사국 : ○명 2. 본청·지역교육청·직속기관·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 ○명	제○조(정원의 총수) (현행과 같음)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 ○명 2. (현행과 같음)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예시) 〉

현 행	개 정 안
제○조(직급별 정원) ○○시·도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직종별·직급별·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별표> 교육위원회 의사국	제○조(직급별 정원) (현행과 같음) <별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 시행일 : ‘10. 7. 1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동시 개정 예정(‘10.6.30까지)